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50
----------	----

제출년월일 : 1996. 1.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우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여 보다 시민편의위주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1장 : 총칙
 - 주차요금 및 가산금 : 주차요금 및 가산금납부대상 및 가산금액
 - 주차거부금지 및 거부대상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대상
- 제2장 :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운영 및 주차요금징수방법, 주차장의 표지
- 제3장 :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요금징수방법, 주차시간단위, 주차시간 표지
- 제4장 : 용자
 - 용자의 대상, 방법, 반환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24조(권한의 위임)

나. 조례(안) : 따로붙임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되 가산금은 제1항의 별표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1.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측정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5.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6.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 시간
7.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8.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9.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운영시간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주차요금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7. 1회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

제4조(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제 2 장 노상주차장

제5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측정계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타시·도 등록자동차
2.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카드의 판매등) ①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의 수탁판매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제8조(하역주차구간)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다.

⑥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다.

제9조(공용의 제한) 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공용제한개시일 전부터 해제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이를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표지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사용기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의사항

제 3 장 노외주차장

제11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당해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단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근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주차시간 단위)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단위는 최초단위를 30분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5분단위로 계산한다.

제14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공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상단에 영등포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안내표지에 신고번호, 관리자성명 및 주차제한차량 등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표지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 4 장 용 자

제15조(용장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 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
2.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일반이용신고를 한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
3.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제16조(용자의 방법) ① 용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용자금의 지급절차 및 용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용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 다.

제17조(용자금의 반환) 용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 다.

1. 용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할 때
2. 상환기간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용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관리된 공영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이전에 위탁관리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별표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제2조제1항관련)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의 주 차 장				
	2시간까지		2시간 초 과	1일 주차권	월 정기권		1회 주차		월 정기권	
	1구획 최 초 30 분	1구획 15 분	1구획 15 분	(야간 에 한함)	주 간	야 간	1구획 최 초 30 분	1구획 15 분	주 간	야 간
1급지	2천원	1천원	2천원	5천원	.	.	1천600원	800원	20만원	10만원
2급지	1천원	500원	1천원	4천원	.	.	1천원	500원	12만원	6만원
3급지	400원	200원	.	3천원	4만원	.	300원	150원	4만원	4만원
4급지	200원	100원	.	2천원	4만원	4만원	200원	100원	2만원	2만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경인로·선유로·노들길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써 3급지 및 4급지를 제외한 주장
 - 나. 2급지 : 1급지, 3급지 및 4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다. 3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중 상업·업무지역 인접에 있어 환승기능이 전환된 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라. 4급지 : 1) 3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3급지 주차장중 야간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
 - 마.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설정에 따라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한 주차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 가. 10부제 운행차량(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수가 운행일자와 같은 때에 운행하지 않는 것)
 - 나. 출근시간대 3·4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3인 이상 탑승한 자동차)
 - 다. 기타 시장이 정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및 구청장이 도시교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등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 나. 국가유공자에우등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형자동차(800cc이하)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별표2>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표(제7조의제6항관련)

급	지	최 초 1 시 간	1 시 간 초 과
1	급 지	1,000원	15분당 1,000원
2	급 지	500원	15분당 500원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10조제2항 관련)

90cm

80cm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1.8m~2.5m

- 비 고 -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 씨(고딕)
공 영 주 차 장	알루미늄 및 철판	녹 색	흰 색
민 영 주 차 장		청 색	흰 색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표지(제14조제1항 관련)

80cm

70cm

주 차 장

1.8~2.5m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 (청색)
 문자 (흰색)
- 규 격 : 내부표지판 (가로 30, 세로 25센티미터)
 문자(가로 17, 세로 17센티미터)

[별지 제3호서식]

외의주차장위치안내표지판 (제14조제3항 관련)

60cm

60cm

주 차 장

parking

← 100m

1.5~2.5m

- 비 고 -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 (청색)
문자 및 기호 (흰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2. 7.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1996년 1월 2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6년 1월 2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40회 임시회의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6년 2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가. 제정이유

우리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여 보다 시민편의 위주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제1장 : 총칙
 - 주차요금 및 가산금 :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대상 및 가산금액
 - 주차거부 금지 및 거부대상
 - 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대상
- 제2장 :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운영 및 주차요금 징수방법 · 주차장의 표지
- 제3장 :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요금 징수방법 · 주차시간 단위 · 주차시간 표지
- 제4장 : 용자
 - 용자의 대상 방법 · 반환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재한)

구청에서 적용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규정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여 관계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요금 등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주차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10부제 운행차량에 대하여 100분의 50범위안에서 할인한 주차요금을 적용

나. 수정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별표1의 비고5의 "가"란을 삭제함.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50
----------	----

제출년월일 : 1996년 2월 7일

제출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10부제 운행차량에 대하여 100분의 50범위안에서 할인할 주차요금 적용

2. 수정안 골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별표1의 비고5의 "가"란을 삭제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중 별표1의 비고5의 "가"란을 삭제한다.

원안	수정안
가. 10부제 운행차량(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수가 운행일자와 같을 때에는 운행하지 않는 것)	가. <삭제>